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에 대한 준비기간 안내

1. 항상 우리부 업무에 협조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2. 의료법 개정('16.5.29)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하며,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대통령령)이 '17.3.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다만, 시행 예정인 대통령령에서 명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고시는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안내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4. 따라서 관련 고시가 공포되고,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만들어 달 수 있는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 각 협회는 소속된 의료기관에 위 사항을 알려 주시고, 각 지자체에서는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의료기관의 명찰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 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한정훈

행정사무관

오성일

보건의료정책 전결 2017. 2. 20.

과장

정윤순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70 (2017. 2. 2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29 팩스번호 044-202-3908 / hoon11@korea.kr

/ 대국민 공개